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7일, 최보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훈의원)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

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을 지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무장애 관광(barrier free tourism)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열린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무장애 관광이란 ‘배리어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을 근거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분야에서의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하기 편리하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중 대부분은 아직까지 관광·여행 여건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과반수에 가까운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이동 편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 부처 차원에서 관광사업 실시 및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으로는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은 위 법정사항 중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아래에서 보듯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앞서 언급한 법정사항을 포괄하여 9대 정책 분야, 30대 중점 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9대 정책 분야의 하나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문화라는 범주 안의 여러 하위개념 중 하나인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해서만 다시 법률에서 특정하여 열거하는 것은 문화의 범주 내 다른 하위개념과 구별되어야 할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임.

둘째, 개정안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① 개정 시점 이후, 2028년부터 새로운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라는 점, ② 현행법 제10조의2제4항1)에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립하는 경우부터”라는 표현은 “~변경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1)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